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4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7. 16.

발 의 자 : 김 웅 · 허은아 · 박대수
김희국 · 윤희숙 · 전주혜
신원식 · 김형동 · 곽상도
유경준 · 김미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내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하고, 국가안전정보처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」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에서 국가안전정보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보위원회로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국가안전정보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제1항제16호 및 제65조의2제2항제1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

영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1543호), 「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155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16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국가안전정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
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“국세청장”을 “국가안전정보처장, 국세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. 1. ~ 15. (생 략) 16. 정보위원회 가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나.</u> (생 략) 17. (생 략) ② (생 략)	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 ----- -----. 1. ~ 15. (현행과 같음) 16.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<u>나. 국가안전정보처 소관에</u> <u>속하는 사항</u> <u>다.</u> (현행 나목과 같음) 17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65조의2(인사청문회) ① (생 략)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 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. 1.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 소 재판관,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위원, 국무위원, 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, 국가정보원 장,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,	제65조의2(인사청문회) ① (현행 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금융위원회 위원장, 국가인권 위원회 위원장,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장, <u>국세청장</u>, 검찰 총장, 경찰청장, 합동참모의 장, 한국은행 총재, 특별감찰 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 의 후보자	----- ----- -----<u>국가안전정</u> <u>보처장, 국세청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2.·3. (생 략) ③ ~ ⑥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 ③ ~ ⑥ (현행과 같음)